

기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제조담배도매업」 사무를 조례로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1)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2)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관계장부, 서류의 확인, 열람, 과태료부과·징수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함.(안 별표)

(1) 변경신고,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의 수리

(2)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 검사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사무의 위임 등)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본 개정조례안의 제조담배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사무(등록, 휴·폐업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5개 단위사무)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이나 담배사업법 개정('99. 12. 31)으로 본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되어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사무(재활용신고, 휴·폐업신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5개 단위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99. 8. 9)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기존의 폐기물에 관한 상당의 관련사무가 구청장에게 기 위임되

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여도 별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7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1

2000. 5.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00년 4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 건립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4개소 및 국·내외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수유동 122-3, 2000. 7 개관 예정)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시흥동 558-1 외 11, 2000. 7 개관 예정)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마장동 798-1, 2000. 7 개관 예정)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쌍문동 19-12,

<p>2000. 9 개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관)</p> <p>※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명동2가 50-14, 2000. 5 개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새로이 설치되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안 부칙)</p> <p>다. 참고사항</p> <p><input type="checkbox"/>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95조</p> <p>○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p>○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p> <p>① ~ ②(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생략)</p> <p><input type="checkbox"/>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p> <p>○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 자치구, 1 노인종합복지관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금년 7월중 개관예정인 강북, 금천, 성동, 도봉 노인종합복지관과 국·내외 청소년들간의 대화, 워크숍, 문화교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차하여 5월중 개관예정인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p>	<p>로의 설치근거를 정하고</p> <p>○ 동 조례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민간위탁사무명에 상기 4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조치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p> <p>○ 다만, 향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후 공사착공 또는 시설확보(취득 및 임대차)전에, 동 공공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건은 운영개시 전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회의 결을 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생략</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0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p> <p>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p> <p>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소기업</p>
--	---